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96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확대에 인하여 생계의존형인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상권잠식은 물론 경제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
- 대형 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를 두고, 입점예고지역의 상권영향조사와 입점지역의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지역 업체 생산물품 납품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입점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대형유통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2.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6. 재래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5.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정의) ○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및 별표 1, ○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110호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표 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정의)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 련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2]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 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제5조의2(대형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시행일 : 2011.1.1]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